

는 것이 지방부가가치세이다. 가까운 장래에 이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나라는 브라질, 아르헨티나, 멕시코 등이다. 종래의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지방정부의 세원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. 이에 따라 대부분의 중앙정부들은 이에 대한 통제를 고수하려고 해

왔다. 그러나 부가세(piggyback tax) 형태의 지방부가가치세의 도입은 실현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.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를 도입하고 있는 캐나다 등 외국의 세제를 참고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국가와 지방이 공동세원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. ☺

지방세 관련용어 해설

• 假登記(가등기)

본등기를 위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인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 그 요건이 완비될때에 행해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해 두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를 말하는데 이는 일종의 예비등기이다.

그러나 이 가등기는 후에 요건을 갖추어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된다.

• 假處分(가처분)

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·인도 기타의 청구권 집행 보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및 그 집행으로 행하는 처분을 말한다.

가처분명령을 원칙적으로 하는 본안(本案)의 관할법원의 관할에 속하나 급박한 경우에는 가처분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재판장이 발할 수 있다.

가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세 중 등록세에 있어서는 가처분 대상 채권금액의 1,000分の 2에 상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(地法§131①7).

- 편 집 실 -